



안토니오 알 비야라이고사
시장

안건: 로스앤젤레스 시 사업 세금

로스앤젤레스 시는 현재 사업 세금등록 증명서를 취득하지 않은 채 시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들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편지의 발송 이유는 본인이 현재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스앤젤레스 시 내에서 사업에 종사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통지서는 시 사업세금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제공되었습니다. “질문사항” 목록은 시 웹사이트인 www.lacity.org/finance 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본인이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세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최근 세금보고 검토 결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 관련활동으로 수입을 얻었거나 사업 비용을 보고하였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법은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개인, 동업 및 주식회사가 등록 증명서 및 적용되는 사업 세금 납세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본 시의회법은 자영업자를 하는 도용인(independent contractor) 및 거주지를 근거로 하는 사업체를 포함합니다. 기록 상 본인은 유효한 등록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으며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법 21.03조항(세금 부과)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사업을 운영 할 시 사업세금 납세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통지서의 답변을 신속히 보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세금의 의무가 없더라도 추후에 발송될 우편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본인의 입장을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통지서에 답변하지 않으면 추가 집행 적용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업데이트 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한가지를 하십시오.**

-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법 21.03을 준수하기 위해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재정 사무실로 보내주십시오. 본인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재정 사무실은 전 세금 년도에 적용되는 납세금액의 청구서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 로스앤젤레스 시 사업세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서면으로 된 답변을 보내십시오. 본인의 답변을 검토한 후 자료에서 제외하거나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 정보를 위해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 사업체가 로스앤젤레스 시 외에 위치해 있다면 사업체 주소를 제공하십시오. 자료를 업데이트할 것이며 추후 발송될 우편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 시에 이미 등록하였고 유효한 사업세금 등록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신청서에 계좌번호를 기입한 후 보내셔서 추후 발송될 우편에서 제외하도록 하십시오.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로 연락하시거나 본 편지의 2쪽에 명시된 사무실을 방문하십시오.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City of Los Angeles, Office of Finance/Revenue Management Division, P.O. Box 53478, Los Angeles, CA 90053-0478.**

본인의 입장에 상관없이 양식을 위의 주소로 보내실 때 서명하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사업세금 집행프로그램 및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법 21.03조항에 관한 정보는 재정 사무실 웹사이트인 www.lacity.org/finance 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법 21.03조항을 검토하시려면 사업세금 법(Business Tax Ordinance)을 클릭하십시오. 본 안건의 해결을 위해 본 조회서의 신속한 답변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정 사무실

본사

시청 사무실 200 N. Spring St. Rm 101 전화번호 (844)663-4411 월-금 오픈 오전8시-오후5시

지사 및 근무시간

밴나이스 관청 6262 Van Nuys Blvd. Rm 110 전화번호 (844)663-4411 월-금 오픈 오전 8시-오후5시

웨스트

로스앤젤레스 1828 Sawtelle Blvd. Rm 102 전화번호 (844)663-4411 월-금 오픈 오전 8시-오후5시

위의 정보 또는 다른 안건의 최신 정보를 원하시면 www.lacity.org/finance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납세자 도움 전화번호인 (844)663-4411로 연락하십시오. 또한 [위에 열거된 지사를 방문하거나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프로그램을 참조하셔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 시에 미납한 세금이 있으십니까?

신용카드 지불 재정 사무실은 매스터 카드, 비자, 디스커버 및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받습니다.

할부 지불 납세금이 \$1,000 이상이면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납세금의 할부지불을 요청하는 정식 편지를 보내시면 청구서 담당부서로 회부될 것입니다. 본인의 총 납세금은 원금, 이자 및 벌금을 포함한 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AB 63 세금 시행 프로그램에
관련된 질문사항**

1. 질문: AB 63 세금 시행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대답: 최근 주 입법의 결과로, 캘리포니아 주 세금관리 위원회(Franchise Tax Board)는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 내의 거주자, 주식회사, 및 다른 단체들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일정한 기록들을 밝힐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세금관리 위원회(FTB)의 기록을 현존하는 기록과 대조하므로 시 내의 등록 사업체를 확인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추가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으로 인해 산출될 세입은 미래의 사업체 세금제도 개선 및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2. 질문: 제가 본 통지서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답: 저희 기록에 의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로스앤젤레스 시 내에 위치해 있을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세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그 사업체가 본 시의 세금 등록 증명서를 취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 납세인들은 그 중 한 사람만 시 납세 의무가 있더라도 세금보고서의 첫번째 명시자 이름으로 보내진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 본 통지서의 답변을 위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인가요?

대답: 본 통지서에 답하는 정확한 만기일은 없지만 로스앤젤레스 사업체 납세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응답하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의 이자 및 벌금이 추가됨을 기억하십시오. 제 시간에 세금보고를 하고 이자 및 벌금을 피하기 위해 각 세금 년도의 2월 말 전에 로스앤젤레스 시 사업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2006년 세금 년도에는 2006년 2월 28일까지 보고하셔야 합니다.

4. 질문: 만약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답: 답변을 하지 않으면 시의회법 21.03조항(세금 부과)을 위반하는 것이며 본 기록은 시 검사에게 제출되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질문: 전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사업을 시작거나 사업체를 본 시로 이전했을 경우에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대답: 시의회법 21.30조항은 로스앤젤레스 시의 신규업체 및 타 시에서 현존하던 사업체를 본 시로 이전한 사업체에 세금 면제를 제공합니다. **신규업체 및 타 시에서 본 시로 이전한 사업체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금등록 증명서를 취득하였을 경우 첫 해 사업체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마감일까지 세금등록 증명서를 취득하지 않는 사업체는 첫 해 세금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며 마감일을 넘긴 벌금 및 이자를 포함한 첫 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시는 사업체의 첫 해 과세대상 총 수익액이 \$500,000 이하이며 사업 창설 후 2년째 되는 해의 2월 말까지 사업체 등록을 갱신한 사업체에게 세금 면제 혜택을 드립니다.

6. 질문: 저는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는 무엇을 사업이라고 간주하나요?

대답: 이익 또는 이득을 위해 시 내에서 하는 대부분의 활동은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사업체 세금에 포함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법(LAMC)은 “사업체” 를 이익 또는 이득을 위해 세금 납세자 또는 타인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행하는 어떤 활동, 사업, 직업, 상업 등을 뜻합니다. 본 용어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혜택을 위한 부업과 직접적 사업, 비영리 단체 및 상업 협회도 포함합니다. 수동적 투자를 통한 배당금 및 이자를 받는 이유만으로는 사업을 한다고 간주할 수 없습니다(로스앤젤레스 시의회법(LAMC) 21.00 조 (h)항). 고용인으로 수당을 연방 양식 W-2로 보고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며 사업 세금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위의 정의가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지 의논하기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 (213)473-590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7. 질문: 저는 직장에서 W-2 양식 대신 1099 양식을 받습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 시 사업세금 등록 증명서를 취득해야만 합니까?

대답: 도급인(Independent Contractor)으로 일하는 사람은 W-2 대신 1099로 급료를 받으며 로스앤젤레스 시 사업 세금 납세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법 (LAMC) 21.00 조, (j)항은 도급인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일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사업에 종사한다고 간주하며 시 사업 세금납세 책임을 부여합니다. 시 사업 세금법령이 적용되는지 확실치 않으시면 저희 사무실(213)473-5901로 연락하여 위의 정의가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지를 논의하십시오.

8. 질문: 로스앤젤레스 시는 “도용인”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대답: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법 (LAMC)은 “도용인”을 개인이 아닌 어떤 존재로서 주체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정한 보수를 받고 특정한 결과를 위해 주체를 위해 한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이 성취되는 과정이 아닌 일의 결과에 관하여만 주체의 관리를 받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도용인의 수익은 주체에 의해 국세청 양식 1099를 통해 국세청에 보고하거나 국세청 양식 1040 및 스케줄 C로 보고하여 이를 통해 거주지를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 172,783 에 의해 추가, 유효일 9/30/99)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법 21.00조 (j)항).

9. 질문: 로스앤젤레스 시는 “고용인”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대답: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법 (LAMC)는 어떠한 주체를 위해 일하는 도용인(Independent Contractor)이 아닌 개인을 “고용인”으로 정의합니다. 고용인은 주체로부터 국세청 양식 W-2를 통해 국세청에 보고되는 소득을 받아야 하며 국세청 양식 1040, 스케줄 C로 보고할 수 없고 스케줄 C를 통해 거주지를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것에 관한 비용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령 번호 172,783에 의해 추가됨, 9/30/99부터 유효)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법21.00조, (K)항).

10. 질문: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법(LAMC) 21.00 조항의 “도용인” 및 “고용인”의 전체적 정의를 살펴보았으며 1099로 제 보수를 보고하지만 전 “고용인”의 정의에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대답: W-2가 아닌 1099로 보수를 받는 사람은 “도용인”으로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사업을 하며 시 사업 세금에 적용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도용인 및 고용인의 정의는 로스앤젤레스 시 법령 번호 172,783 및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법 21.00조 (j)와 (k)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두 가지에 속하지 않거나 실제로 고용인일 경우 시 재정사무실에 고용인 증명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인 증명서는 고용주가 서명하여야 하며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법 21.00조 (k)항에 근거하여 고용인이라는 증명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고용인 증명양식은 재정사무실 웹사이트인 (www.lacity.org/finance) 또는 재정사무실 지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11. 질문: 저는 집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등록을 해야만 합니까?

대답: 예. 집내에서 하는 사업은 시 사업 세금이 적용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주택구역이나 상업구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재정사무실로부터 사업 세금 등록 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12. 질문: 저는 올 해 대부분을 파트타임제로 컨설팅 일을 했습니다. 시 세금 납세 책임이 있나요?

대답: 예.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 세금 등록 증명서를 취득해야 하며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법의 준수를 위해 매년 세금 갱신 양식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도업자로서 파트타임 컨설팅 사업을 하며 그 사업체가 로스앤젤레스시 내에 위치해 있다면 (거주지를 사업체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시 내에서 부과하는 사업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규업체 및 소규모업체는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신규업체 세금 면제 요구사항에 관해서는 5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소규모업체 세금 면제 요구사항에 관한 추가정보는 4쪽을 참조하십시오.)

13. 질문: 저는 탁아소를 운영하는데 로스앤젤레스시 사업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대답: 8명 이상의 아동을 보호하는 탁아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로스앤젤레스시 사업 세금 등록을 취득할 의무가 있으며 시 사업 세금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21.189.3조 (b)항에서 “탁아소”는 24시간 이내에 개인의 보호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호, 도움 및 개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비료적 보호를 제공함을 의미합니다.

소규모 가족 운영 탁아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로스앤젤레스시 사업 세금 등록 취득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위생 및 안전 법 1596.78조항은 집에 거주하는 10살 미만의 아동을 포함한 8명 이하의 아동에게 가족 탁아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소규모 가족 운영 탁아소로 정의합니다.

추가로, 거주지를 사용하여 탁아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12명 이상의 아동을 보호할 경우, 탁아소 점유

소방 허가(F518)를 취득하며 유지해야 합니다.

14. 질문: 저는 최근 2년의 시 사업세금 납세 책임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자 및 벌금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대답: 법에 의해 시는 현년도 및 전 2년의 원금, 이자 및 벌금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체납한 해마다 모든 미납 세금금액에서 이자 및 벌금이 추가됩니다. 이자율은 평균 연방 단기율 더하기 3퍼센트 포인트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재조정됩니다. 2006년도의 경우 산정된 이자율은 매달 0.6%였으며, 2005년도의 경우 산정된 이자율은 매달 0.5%였으며 2004년도는 매달 0.4%, 2003년도는 매달 .05%였습니다. 벌금은 누진 방법으로 사정되며 첫 달 5%로 시작하여 체납 4개월째부터는 40%로 증가합니다.

세납자는 벌금면제 신청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지불해야 할 원금 및 이자금액을 지불한 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 면제 서면 신청은 사건별로 고려됩니다.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는 추후 벌금에 청구될 것입니다.

15. 질문: 저는 로스앤젤레스시에 살고 있지만 로스앤젤레스 시 밖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적용되는 로스앤젤레스 시 사업세금 책임은 무엇인가요?

대답: 모든 사업이 로스앤젤레스시 밖에서 이루어 진다면 로스앤젤레스시 사업 세금 납세 책임이 없습니다.

16. 질문: 저는 본 통지서를 받았지만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대답: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이전에 사업을 운영하였고 사업세금 등록을 하지않았다면 사업한 날짜까지 적용되는 년도의 총 수익액, 사업을 그만 둔 날짜 및 신청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최근 3년의 사업세금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을 하지 않은 역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17. 질문: 저는 임대 또는 세를 놓는 거주지 또는 상업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업으로 간주되나요?

대답: 시 내 소유지에서 징수한 수익은 사업수입으로 간주되며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법에 의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18. 질문: 할부제로 지불 할 수 있나요?

대답: 예, 납세 금액이 \$1,000 이상일 경우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분할 지불을 요청하는 정식 편지를 보내시면 청구서 담당부서로 회부됩니다. 총 금액은 원금, 이자 및 벌금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9. 질문: 등록을 해야 할 사업체가 있으나 본 통지서가 전 주인 이름으로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답: 신규업체의 주인이라면 세금등록 증명 신청을 해야만 하며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소 또는 이름이 잘못되었다고 언급하셔서 저희 부서가 신규사업체를 등록시키고 전 사업체와 관련하여 정보를 수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20. 질문: 단독부문신청(Single Category Filing)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본 사항을 선택할 자격이 주어집니까?

대답: 시의회는 “단독부문신청” (SCF)을 허용하는 수정된 사업세금법 21.06.1조항을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법에 추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단독부문신청 사용여부는 납세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독부문신청 선택사항에 의하면 배분을 제외한 총 수익액의 80% 이상이 본 부문에 해당될 때 세율이 연 총 수익액에 근거한 복합부문에 해당되는 납세자가 단독부문을 기준으로 한 총 수익액 사업세금의 100%를 지불 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단독부문신청(SCF)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재정 사무실 웹사이트 (www.lacity.org/finance/)를 방문하시거나 저희 사무실 (844-663-4411)로 연락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단독부문신청에 관해 문의하십시오.

21. 질문: 신청서를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대답: City of Los Angeles
Office of Finance, Revenue Management Division
P.O. Box 53478
Los Angeles, CA 90053-0478

소규모 업체 세금 면제를 위한 정보 및 질문사항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법 21.29(a)조항 - 소규모 업체 세금 면제 - 2005년 7월 1일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법 21.29조 (a)항은 소규모업체 세금 면제 한계의 증액을 위해 수정되었습니다. 2005년 7월 1일, 소규모 업체 세금 면제 한계는 \$5,000에서 \$50,000로, 2006년 7월 1일에는 \$50,000에서 \$100,000로 증액되며 업체가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갱신신청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50,000의 소규모 업체 세금 면제는 설립된 사업체에 한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위치해 있는 신규업체에게는 더 자유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세금 면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5번 질문 참조) 소규모 업체 세금 면제조항은 업체가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갱신신청을 하도록 요구하므로 본 면제는 2006년 사업 세금 갱신 기간동안인 2006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것입니다.

소규모 업체가 로스앤젤레스 시 내외(세계적으로)에서 산출된 과세대상 및 과세제외대상의 총 수익액에서 세금한도금액이 \$50,000이 넘지 않아야 본 면제혜택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소규모 업체가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갱신신청을 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갱신신청을 정해진 날짜에 하지 않을 경우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법 21.29조항에 의거하여 체납으로 간주되며 소규모업체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2005년 동안 시 외의 납세자가 전 세계에서 산출한 과세대상 및 과세제외대상의 총 수익액수가 \$44,500이었습니다. (시 내의 과세대상 총 수익액수는 \$25,000이었음) 2006년 2월 4일, 납세자는 사업세금 갱신신청을 하며 전 세계에서 산출된 과세대상/과세제외대상 전체 총 수익액수인 \$44,500을 기준하여 소규모 업체 세금 면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2005년 동안 시 내의 납세자가 산출한 과세대상 및 과세제외대상의 총 수익액수가 \$57,000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 내 및 시 외) 시 내에서 산출된 총 수익액수가 \$50,000 미만이라도 2006년 사업세금을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참조.

시 내 소매업체의 2005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u>전 세계적으로 산출한 총 수익액수</u>		<u>과세대상 세금한도금액(배분)</u>
시 내	\$ 5,000	100%	\$ 5,000
시 외	\$50,000	40%	\$20,000
(캘리포니아 매출액)		과세대상: 14판결 사용	
타주 매출액	<u>\$ 2,000</u>	과세제외대상	<u>\$ 0</u>
	\$57,000		\$25,000

납세자의 시 내외 과세대상 및 과세제외대상 총 수익액수가 \$50,000을 초과하므로 보고하는 세금한도금액이 \$25,000임에도 납세자는 사업세금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알아둘 것: 최소액 미만의 과세대상 총 수익액수를 산출하는 (소규모 업체 면제 자격이 없는) 시 외 납세자는 최소액 세금을 비례 배분합니다.

질문: 2005년 7월 1일부터 소규모업체 세금 면제 한계가 \$50,000로 증액된다면 2005년 7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 소규모업체 면제를 신청해야 하나요?

대답: 아닙니다. 소규모업체 세금 면제 한계 증액은 2005년 7월 1일부터 유효하며 갱신하는 업체에 해당되고 신규업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본 소규모업체 세금 면제조항은 2006년 1월까지의 신청할 수 없는 정해진 날짜에 갱신신청을 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2006년 갱신기간 동안). 업체가 2005년 7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 갱신신청을 한다면 업체는 연체된 것으로 간주되며 세금의 원금, 이자 및 벌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질문: 제가 소규모업체 면제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99,000 미만의 수익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대답: 아닙니다. 모든 총 수익액수는 시 내외(전세계)에 적용되며 과세대상 및 과세제외대상 액수 모두가 보고되어야만 합니다. 소규모업체 면제 한계 액수가 \$100,000로 증액되는 것은 2006년 7월부터임을 기억하십시오. 소규모업체 면제조항은 정해진 날짜 내에 갱신신청을 하는 업체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100,000의 소규모업체 면제는 2007년 1월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7년 갱신기간 동안)